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추가〉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353호, 제2207354호)

2025. 2.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II .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5
2. 검토의견	7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 · 박정현 · 김성희 · 정을호 · 김준혁 · 조인철
김준형 · 김동아 · 김문수 · 장철민 · 임호선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5. 1. 8.

3) 회 부 일 : 2025. 1. 9.

※ 의안번호 : 735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 교육 관련 기관이 추천하는 7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는 점, 위원장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인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 · 박정현 · 김성희 · 정을호 · 김준혁 · 조인철

김준형 · 김동아 · 강경숙 · 김문수 · 장철민 · 임호선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5. 1. 8.

3) 회 부 일 : 2025. 1. 9.

※ 의안번호 : 735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 교육 관련 기관이 추천하는 7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는 점, 위원장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인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5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 ----- ----- ----- -----.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u>금융위원회 위원장</u>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1. ----- ----- ----- ----- <u>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u> -----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총 67인으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23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직위(44인)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음.

[표-2]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 방송통신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관장

** 국가인권위원회 : 독립기구 기관장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2년에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임.

[표-3] 국가교육위원회 직무 및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설치목적	◦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직무	◦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고시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위원회 구성	◦ 상임위원 3인(위원장 1인 포함)을 포함한 21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아래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위촉 - 국회 추천 9인(상임위원 2인 포함). 1인은 비교섭단체 추천 - 대통령 지명 5인(상임위원 1인 포함) - 교육부차관 -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인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인 - 시·도지사 협의회 추천 1인
위원장 선출	◦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작성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장관급¹⁾)으로서 임기는 3년이며(한 차례 연임 가능),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거나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²⁾

1)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별표 1]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 위원장은 장관급임.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초정권적 독립기구로 출범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동 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됨.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할지는 동 위원회의 성격 및 직무, 위원장의 위상과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³⁾

다만,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⁴⁾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근거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외에 개별법에도 두어야 하므로,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5호)」의 심사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가교육위원회는 ①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적인 의안제출권이 있는 국무위원 기관이 아닌 점, ②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 정부, 교육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므로 구조적으로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3)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마련하는 것이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바람직함.

4)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있는 점,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이 국가 교육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⁵⁾

문 의 처
02)6788-5015

5)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소수의견도 존재한다는 설명임.

도입 시기	법적근거	대 상 자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 2. 16.)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임명동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제16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3. 2.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2003. 2. 4.)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지명)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 국무위원(대통령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대법원장지명)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국회법」 부칙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5. 7. 28.)	- 국무위원(대통령당선인지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2006. 12. 28.) 「국회법」 개정(2006. 12. 30.)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8. 2. 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8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12. 3.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은행법」 개정(2012. 3. 21.)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제19대국회	「특별감찰관법」 제정(2014. 3. 18.) ※ 「특별감찰관법」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2014. 5. 2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21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20. 8.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 1. 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국무위원(국가보훈부장관)